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차 례

CONTENTS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04
무급휴업·휴직 지원제도 찾기	06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상세내용)	08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FAQ	1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17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20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2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 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요건)

① 무급휴업: ④ 30일 이상 실시, ⑤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⑥ 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 (19인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이상 (1,000명 이상)

② 무급휴직: ④ 90일 이상 실시, ⑤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⑥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⑦ 근로자대표 합의

*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 (지원금액)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 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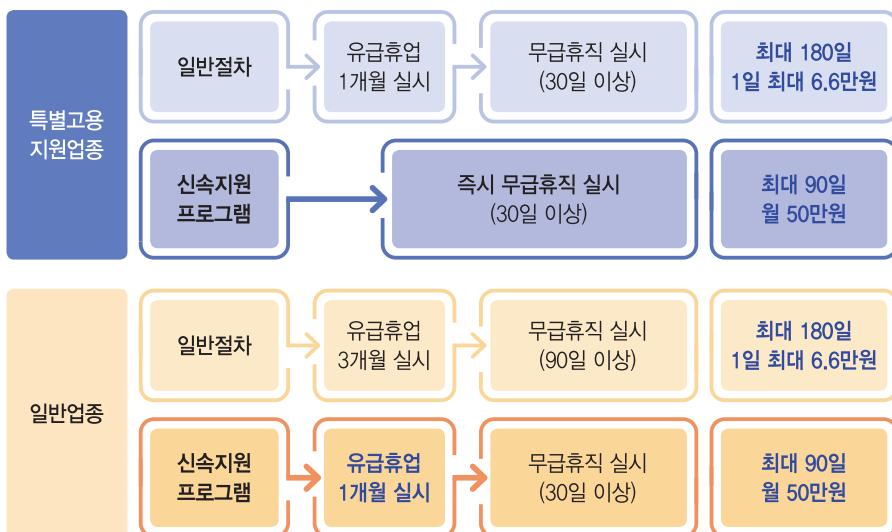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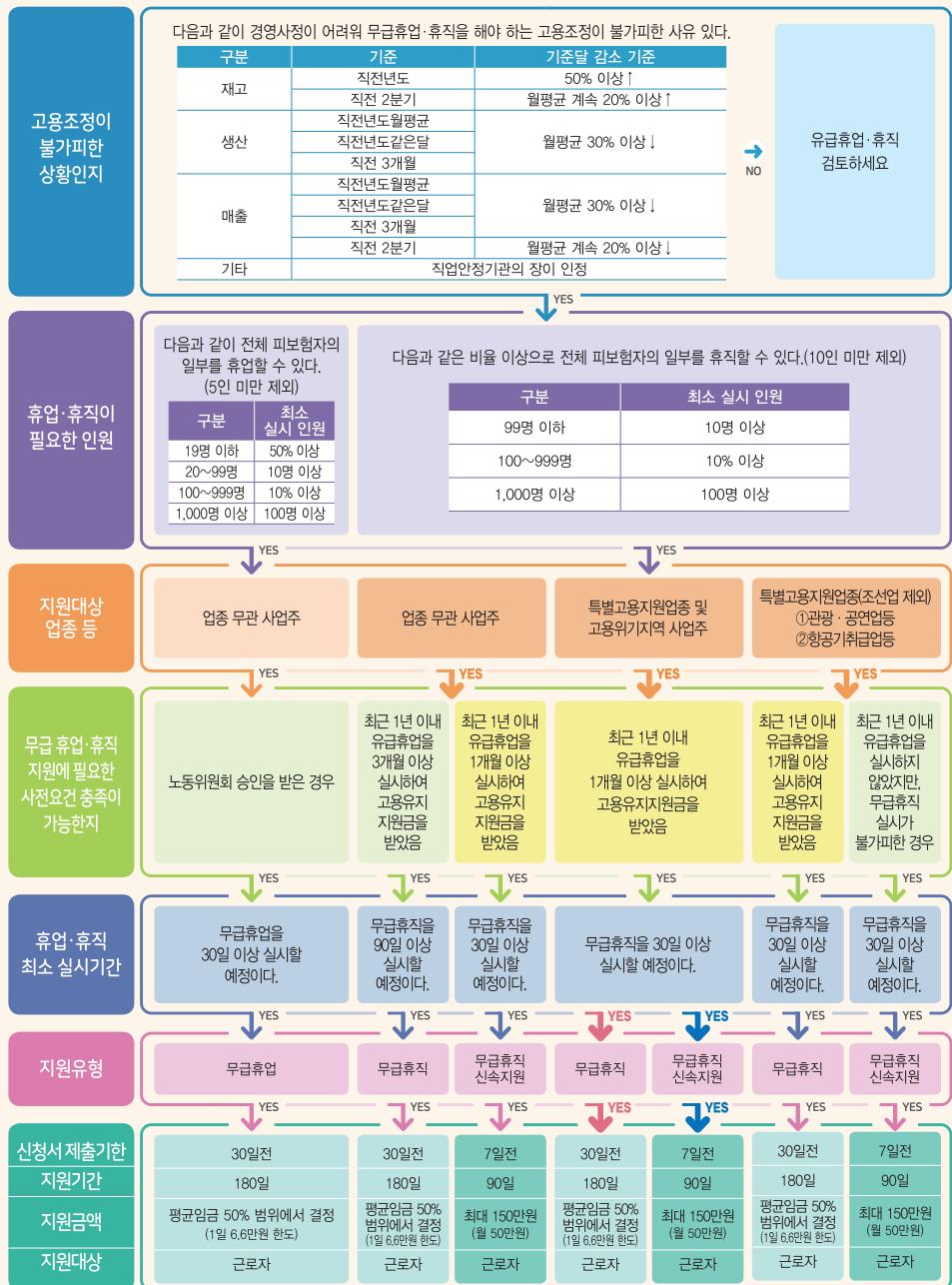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지원업종) '20.4.27~9.15, (일반업종) '20.7.1~12.31 (6.15부터 신청 접수)

〈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 프로그램 〉



무급휴업·휴직 지원제도 찾기



무급휴업·휴직 지원제도 찾기

	무급휴업	무급휴직	무급휴직 신속지원
유형	일반·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 특별고용 지원업종(조선업), 고용위기지역 '20년 12월 31일까지 ①관광·공연업 등 ②항공기취급업 등 '20년 9월 15일까지
사전요건	노동위원회 승인	유급휴업 3개월 유급휴업 1개월	유급휴업 1개월 -
노사협의	협의	협의 합의	합의
실시기간	30일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상
제출기한	30일 전	30일 전 30일 전	7일 전
결정	(청)심사위원회	(청)심사위원회 (청)심사위원회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원기간	최대 180일	최대 180일 최대 180일	최대 90일
지원금액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상세내용)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무급휴업 · 무급휴직			
① 무 급 휴 업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업 사유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직전 2분기	5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월평균 30% 이상 ↓	
			매출	직전 3개월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기타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월평균 3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 대표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② 무 급 휴 직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직 사유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기간	30일 이상 실시		
② 무 급 휴 직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직 사유	구분	기준		
			재고	직전년도 직전 2분기	5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월평균 30% 이상 ↓	
			매출	직전 3개월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기타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실시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 *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		
			근로자 대표 협의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협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③ 무 급 휴 직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최소 실시 인원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10인미만 사업장 제외			
		실시기간	90일 이상 실시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 · 무급휴직	③ 무급휴직 신속 지원
좌동	해당없음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 *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사항 없음 * 조선업 제외 (일반업종)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 *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u>30일</u> 이상 실시	<u>30일</u> 이상 실시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무급휴업 ·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 * 사전요건 확인자료 함께 제출 (예외) 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업안정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제출내용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휴업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기준, 실시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 향상 계획*(필수) * 내용, 기간, 대상자, 비용 등	
③ 공통사항	신청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청	
	공제	(사업주)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결정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신청	
	지급	(센터)피보험자 지정 금융기관 직접 입금	
기타	지원일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	
	반려사유	① 시행령 요건 미달 ② 3년이상 같은달 고용유지실시 ③ 고용보험료 체납 ④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 체불 ⑤ 보완 요구 시항 기한내 미제출	
	지원금 상한액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일 상한액: 6.6만원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지급제외자	①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③ 경영상 이유에 따라 권고퇴직이 예정된 자	
지급제한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 · 무급휴직		③ 무급휴직 신속 지원
좌동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7일 전 (예외) 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업안정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좌동		좌동
좌동		①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에서 특례지원은 최대 90일 한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인당 150만원 한도(월 최대 5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20.9.15까지 (일반업종) '20.7.1~12.31.까지
좌동		좌동
좌동	<p>①~③ 좌동</p> <p>④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u>해당하는 피보험자</u></p> <p>⑤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u>지급받고 있는 경우</u></p> <p>⑥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 · 휴직 <u>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u></p>	
좌동		좌동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FAQ



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4월~)

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요건 확인	2.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u>(무급 휴업 · 휴직 실시 30일 전)</u>	3. 신청 승인 후 통보	4. 무급 휴업 · 휴직 실시 (휴업 30일이상, 휴직 90일이상)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 ✓ 법령상 무급휴업 · 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 사업주가 신청 –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담당 고용센터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 · 휴직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먼저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 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생산대장
매출액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② 무급휴업·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기준		제출 서류
무급 휴업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 이하: 50%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1) 노동위원회 승인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준		제출 서류
무급 휴직	1) (무급휴업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 · 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1. 누가 신청하나요?

- 무급휴업 ·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휴업 · 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 ·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 · 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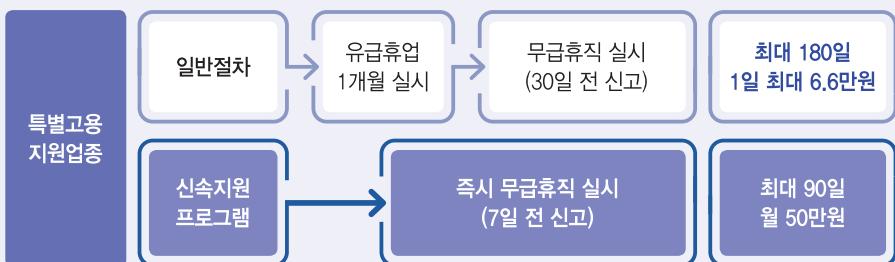


1.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 ·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



*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2.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 4.27.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20.4.27. 이전('20.3.1.~4.27.)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

-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5.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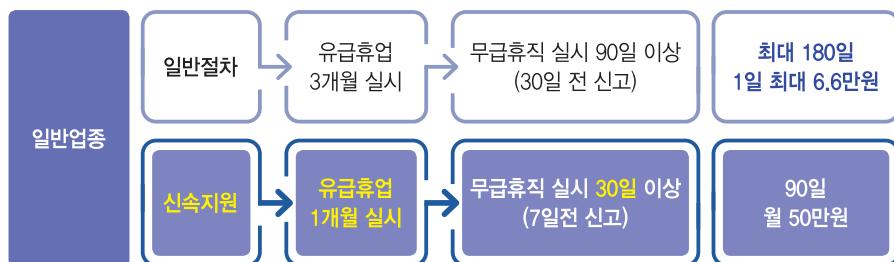
1.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7.1.부터 '20.12.31.까지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6.15.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존 무급휴직 지원제도와 신속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일반업종은 무급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3개월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긴급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급휴업을 3개월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급휴업을 1개월이상 실시하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



*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3.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신속지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신속지원은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 일반업종의 경우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1개월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

-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실시 여부를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동일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 울 청	서울청	서울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 (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구 · 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2,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종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리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양천구 · 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 노원구 · 강북구 · 도봉구 · 성북구	02-2171-1833, 1800~5
중 부 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4816, 4869, 4781, 4988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양구	032-540-564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 부 청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 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부천지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 · 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4 3957/3988/3978/3928 031-920-3958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기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 · 포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 광주시 · 양평군 · 이천시 · 여주시 · 하남시	031-739-3170, 3122, 4991, 4916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안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의왕시 · 군포시	031-463-0761~4, 0767, 0768, 0769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전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031-412-6946~6948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 · 오산시 · 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석사동), 네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 · 화천군 · 홍천군 · 양구군 ·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8(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 · 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 고성 · 양양군	033-630-1909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 · 횡성군	033-769-0960, 0942, 0946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 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 · 정선군 · 평창군	033-371-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 · 동구 · 서구 · 영도구 · 남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사하구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 · 금정구 · 수영구 · 해운대구 · 기장군	051-760-7210~9, 7244~7247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 · 사상구 · 강서구	051-330-9951~9955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 · 함안군 · 의령군 · 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0~7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 · 사천시 · 산청군 · 하동군 · 남해군 · 거창군 · 헤양군 · 합천군	055-760-6751~6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055-650-1811~3, 1893~4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 · 수성구 · 동구)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 서구 · 달서구	053-605-6460~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 · 영덕군 · 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월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 · 김천시 ·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 · 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 · 상주시	054-559-8251
광주청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 · 예천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전라남도 나주시 · 화순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 함평군	062-960-3200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 · 무주군 · 장수군 · 진안군 · 원주군 · 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 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0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7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주 청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 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 · 보성군 · 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응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영암군 · 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 · 해남군 · 완도군 · 장흥군	061-530-2912
대전 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 · 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 · 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 · 증평군 · 옥천군 · 영동군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 · 당진시 · 아산시 · 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 · 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 단양군	043-640-9322
제주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 · 서천군 · 부여군 · 홍성군 · 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 · 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 · 서귀포시	064-710-4462, 4470



